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2015년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깨끗하고 안전한
공기를 위한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문의

기관	소속	연락처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42-865-0734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55-211-1620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53-230-6439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63-270-1833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	031-481-1403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62-410-5212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33-760-6047
한국환경공단	유해대기관리팀	032-590-4675



HAPs 비산배출 관리제도란?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 Hazardous Air Pollutants)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들 비산배출원에 대해 시설관리기준을 적용합니다.

'15년부터 비산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의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왜 필요하죠?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11년), HAPs 연간 배출량은 약 52천톤 정도이며, 이중 약 64%가 굴뚝을 제외한 시설·공정 등에서 비산배출되고 있습니다. 비산배출원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도입하여 비산되는 HAPs를 최소화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관련법 및 대상 사업장은요?



01 관련법

-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
- 비산배출의 저감 대상 사업장의 신고(변경신고) 의무 규정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 원유정제처리업 등 업종기준으로 비산배출 관리대상 규정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제51조의3(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 비산배출시설 신고,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수행주기 규정

02 대상 사업장

▶ 원유정제처리업 등 20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분류	업종	표준산업 분류코드	비고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가.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2015.1.1.부터 적용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가.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나. 합성고무 제조업	20301	
	다.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302	
	라.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3	
3. 1차 금속 제조업	가. 제철업	24111	2016.1.1.부터 적용
	나. 제강업	24112	
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가.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199	2016.1.1.부터 적용
	나.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22212	
	다.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21	
	라.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31	
	마.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22291	
	바.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9	
5. 전기장비 제조업	가. 축전지 제조업	28202	2016.1.1.부터 적용
	나.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2	
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 강선 건조업	31111	31114
	나.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4	
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 기타 선박 건조업	31119	49500
	파이프라인 운송업(저유소에 한정하여 적용)	49500	
8.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위험물품 보관업(저유소에 한정하여 적용)	52104	

※ 2016.1.1일부터 시행 6개 업종을 포함하여 20개 업종으로 확대

대상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하죠?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을 적용 받는 사업장의 경우 아래의 기한에 맞추어 비산배출시설의 신고, 최초점검보고서 제출,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 및 정기점검기관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01 비산배출시설을 관할 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7.21일부터 관할 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식 및 절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에 규정됨

02 2015년 1월 1일부터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3(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기준)에 따른 시설관리기준(별표 10의2)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03 201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점검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은 별지 제20호의 6서식에 따라 최초 점검보고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04 매년 4월 30일까지 연간 점검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15년도 대상 사업장)은 별지 제20호의 6서식에 따라 연간 점검보고서를 익년 4월 30일까지 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간 점검보고서는 매년마다 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2015년 연간점검보고서는 최초점검보고서로 대체하고, 2016년 연간 점검보고서는 2017년 4월까지 제출

05 3년 마다 정기점검 기관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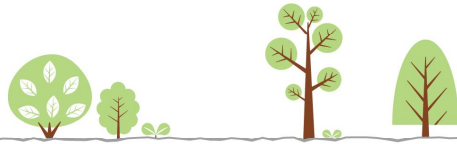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시행규칙 제51조의3 제3항(별표 10의3)에 따라 3년 마다 정기점검 기관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정기점검에 드는 비용은 정기검사 대상 사업장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2015년 중 고시될 예정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적용 대상 사업장 이행일정

적용시기	2015	2016	2017	2018
2015.1.1 (6개 업종)	비산배출시설 신고(2015.7.21 부터-) 비산배출시설 최초점검보고서 제출(기준시일 2015.12.31 까지)	2015.7.21 이전에 비산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2016.1.20일 까지 신고 2016년도 연간점검보고서 제출(2017.4.30 까지)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2015.1.1일 부터 3년마다 정기점검 기관으로부터 정기점검 수행)	
2016.1.1 (14개 업종)		2016.1.1 이전에 비산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2016.6.30 까지 신고 비산배출시설 신고(2016.1.1 부터-) 비산배출시설 최초점검보고서 제출(기준시일 2016.12.31 까지)	2017년도 연간점검보고서 제출(2018.4.30 까지)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2016.1.1일 부터 3년마다 정기점검 기관으로부터 정기점검 수행)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01 업종별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 지침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의 관리자가 해당 시설관리기준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용어설명, 점검보고서 작성요령, 측정방법 등을 포함한 기준 전반에 걸친 세부 설명 지침서를 마련·배포 중입니다. 세부 지침서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 HAPs 비산배출시설과 중복되는 VOCs 배출시설은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제1항에 따른 VOCs 배출시설은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HAPs 비산배출시설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38조의2를 우선 적용합니다.

03 벌칙 및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0~92조(벌칙), 94조(과태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미이행 사항	벌칙 및 과태료 규정*
•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벌칙)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04 HAPs 비산배출시설 무상 기술지원을 실시합니다.

2015년 1월부터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상 기술 지원을 실시합니다.

▶ 기술지원 대상 및 비용

- (신청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1에 따른 비산배출 사업장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등 (다만, 벤젠 등 인체위해성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과 공정 비산배출 특성상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도 지원 대상)
- ※ 기술지원 신청 사업장중 업종, 사업장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지원
- (기술지원 비용) 컨설팅 및 측정분석비용 무상지원(시설설치 및 금융지원 제외)

▶ 기술지원 내용

-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 및 교육
- HAPs 시설관리기준 적용 대상시설 파악 및 시설관리기준 준수방안 전수
- 사업장 자체 점검보고서 검토 및 작성방안 지도

▶ 기술지원 신청방법

- 기술지원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 우편신청 : (404-708)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유해대기관리팀
- 문의전화 : 032) 590-4675, 팩스 : 032) 590-4699, 이메일 : jh@keco.or.kr